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2년 5월 23일 의 제	제43회 - 1호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원안의결

제안부서 인재개발원

제안사유 여성가족부 서울시 관련 지침 내용 및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**주
문**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5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2년 5월 23일 의 구	제43회 - 2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(안) 분	의결사항 원안의결

제안부서 인재개발원

제안사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5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2년 5월 23일 의 제	제43회 - 3호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수정의결

제안부서 인재개발원

제안사유 인권침해 절차 관련 별도의 기준 제정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.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5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2년 5월 23일 의 제	제43회 - 4호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수정의결

제안부서 환경안전품질실

제안사유 중대재해처벌법령,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.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5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2년 5월 23일 의 제	제43회 - 5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원안의결

제안부서 예산재정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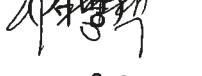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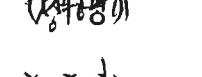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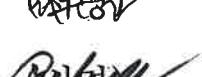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권리위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1-588호 '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폐영 향평가 개선권고')을 규정 내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5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(서명)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2년 5월 23일 의 제	제43회 - 6호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(안)
구 분	의결사항

제안부서 법무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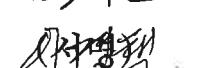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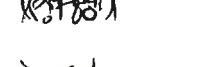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권리위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1-671호 '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' 및 제2013-1호 '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·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')을 규정 내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3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5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(서명)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혼 택	